

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'95. 3. 22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('94.11. 1) 개정되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우리구의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도 시조례의 개정에 맞추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주차요금 단위시간을 30분 단위로 징수하던 것을 기본요금 30분 이후 부터는 10분 단위로 주차요금 징수(안 제3조제3항제2호)
- 교통소통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종 또는 주차목적에 따라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(안 제11조 제1항)

3. 관계법령

- 주차장법 제9조, 제10조
-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, 제9조

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3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주차예정 시간을 초과하거나 제1호의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: 시 조례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이용제한) ① 구청장은 교통소통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

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종 또는 주차목적에 따라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 기간,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.

다만,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[별표1]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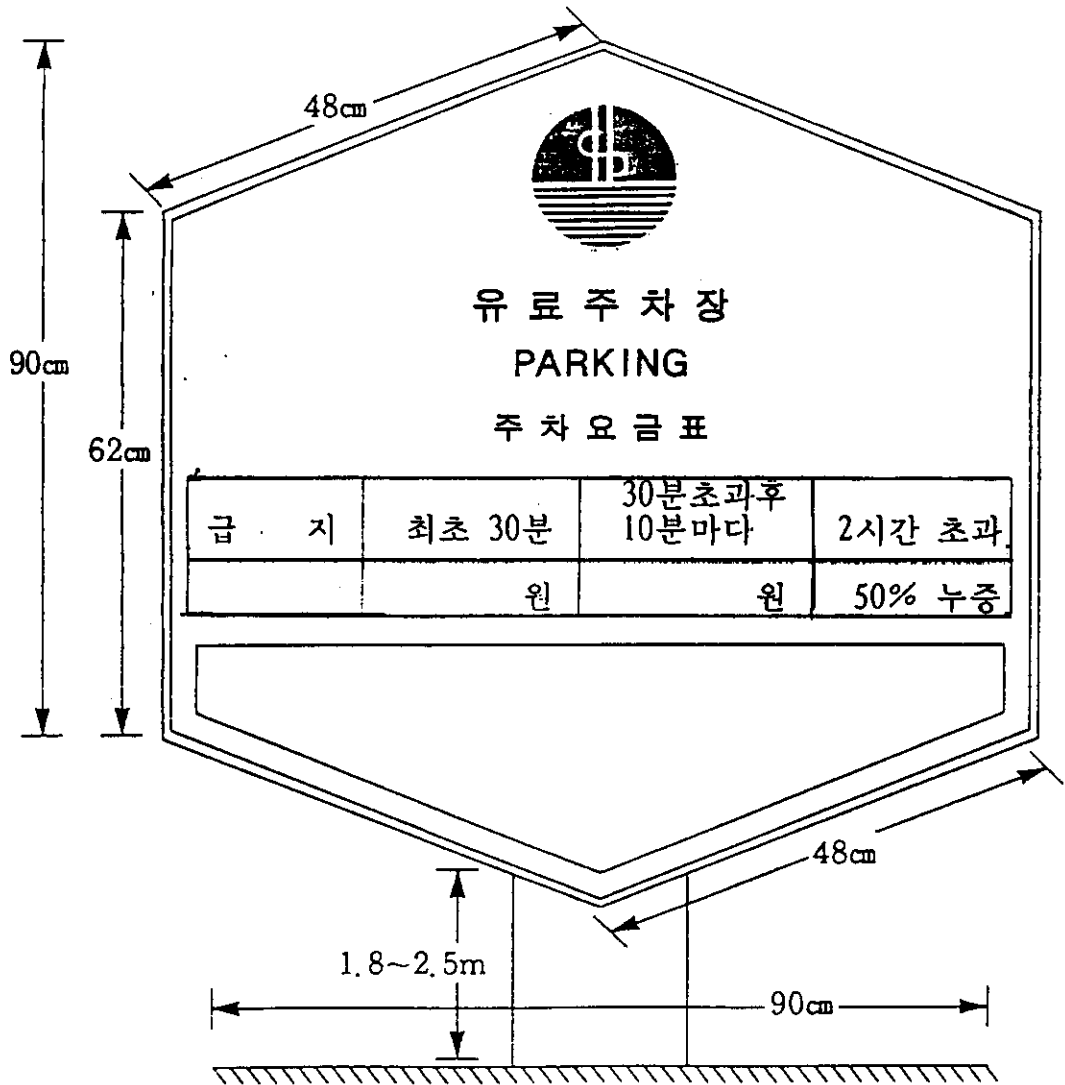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~② (생략) ③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. (생략) 2. <u>주차예정 시간을 초과 하였을</u> <u>경우 : 30분 단위로 시 조례</u> <u>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</u> <u>요금</u>	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거나 제1</u> <u>호의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: 시조례</u> <u>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</u>
제11조(이용제한) <u>법 제10조의</u> <u>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</u> <u>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,</u> <u>제한기간, 제한구역 및 제한</u> <u>사유등을정하여 이용제한</u> <u>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</u> <u>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</u> <u>게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를</u> <u>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</u> <u>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</u> <u>아니할 수 있다.</u>	제11조(이용제한) ① <u>구청장은 교통</u> <u>소통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</u> <u>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종</u> <u>또는 주차목적에 따라 주차장의</u> <u>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</u> <u>을 제한 할 수 있다.</u> 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</u> <u>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</u> <u>제한기간,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</u> <u>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</u> <u>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</u> <u>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</u> <u>한다.</u> <u>다만,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</u> <u>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</u> <u>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

(별표1)

노상주차장표지판 (제5조제1항 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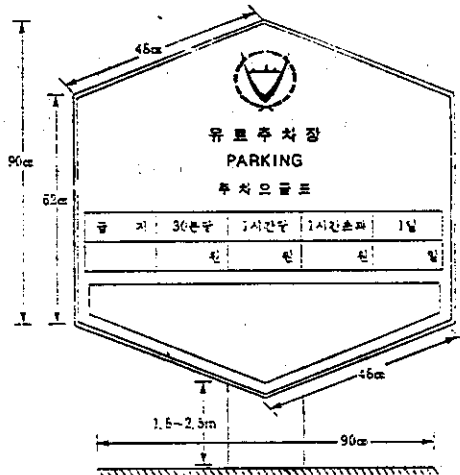


재 료	색 채			
	바 탕	시기표시	영 문	기타글씨(고딕)
알루미늄판	미 색	적색, 청색	지 색	청 색

현행

[별표1]

노상주차장표지판 (제5조제1항 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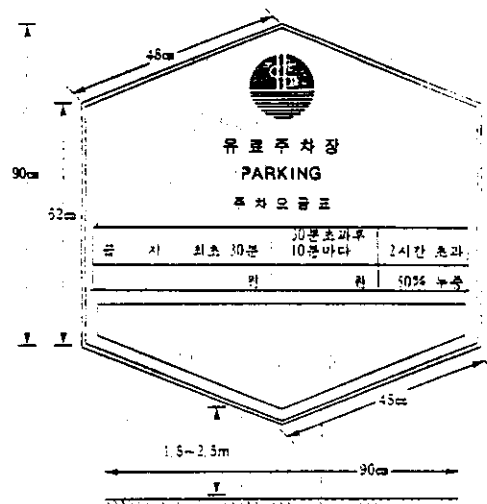


재 료	색					
	바	랑	사기표시	영	문	기타글씨(고딕)
알루미늄판	미	색	초록색	적	색	청색

개정 (안)

[별표1]

노상주차장표지판 (제5조제1항 관련)



재 료	색					
	바	랑	사기표시	영	문	기타글씨(고딕)
알루미늄판	미	색	적색, 청색	적	색	청색